

# 위임전결세칙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전부개정	2013.03.08.	세칙 제 42호
개정	2014.03.19.	세칙 제 52호
개정	2015.04.14.	세칙 제 65호
개정	2016.02.16.	세칙 제 82호
개정	2016.10.21.	세칙 제 93호
개정	2017.03.06.	세칙 제107호
개정	2018.03.07.	세칙 제125호
개정	2019.04.05.	세칙 제140호
개정	2020.03.11.	세칙 제155호
개정	2021.03.05.	세칙 제168호
개정	2021.06.30.	세칙 제178호
개정	2022.03.15.	세칙 제191호
개정	2023.04.06.	세칙 제209호
개정	2023.11.03.	세칙 제219호
개정	2024.04.04.	세칙 제231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제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권한 및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에 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 및 세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5.>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3., 2024.4.4.>

1. “소관임원”이라 함은 감사 및 상임이사를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소장”이라 함은 심사평가정책연구소의 장을 말한다.

4. “센터장”이라 함은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장을 말한다.
5. “실장”이라 함은 각 부서(실, 센터, 단)의 장을 말한다.
6. “본부장”이라 함은 각 지역별 분사무소(이하 “본부”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7. “부장”이라 함은 각 부의 장을 말한다.
8. “담당”이라 함은 각 부의 부장 외 소속원(계약직, 인턴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10.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등)** ① 위임전결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중 실장 및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는 담당을 전결권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4.>
-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임전결기준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관임원 및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⑤ 전결권자 본인의 전결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인정될 경우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 ⑥ 상위직급자는 하위직급자가 위임전결된 사항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⑦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출장·공가·연가·병가 등)인 경우에는 「직제 규정」 제15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한다. <개정 2021.3.5., 2023.11.3.>

**제5조(기안자)** ① 기안자는 팀장이하로 한다. 다만, 업무의 내용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장이 기안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 ② 기안자는 위임전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위 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협의)**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물어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안문서의 협조란을 통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2024.4.4.>

1. 부장 위임전결사항은 관련 부장
2. 실장 위임전결사항은 관련 실장 또는 관련 부장
3. 위원장, 소장 및 센터장 위임전결사항은 관련 실장
4. 소관임원 위임전결사항은 관련 실장
5. 원장 결재사항은 소관임원, 위원장, 소장, 센터장 및 관련 실장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거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 후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등)** 전결권 행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의 표시)** 기안문서에는 전결권자의 “전결”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평가)** ①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4.>

## 부 칙<세칙 제42호, 2013. 3. 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세칙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세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시조직에 관한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직의 각 직위별 위임 전결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세칙 제52호, 2014. 3. 19.>

이 세칙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65호, 2015. 4. 14.>

이 세칙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82호, 2016. 2. 16.>

이 세칙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93호, 2016. 10. 21.>

이 세칙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107호, 2017. 3. 6.>

이 세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125호, 2018. 3. 7.>

이 세칙은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세칙 제140호, 2018. 4. 5.>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155호, 2020. 3. 11.>

이 세칙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168호, 2021. 3. 5.>

이 세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178호, 2021. 6. 30.>

이 세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191호, 2022. 3. 15.>

이 세칙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209호, 2023. 4. 6.>

이 세칙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219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 별표 위임전결기준 개정규정 중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세칙 제231호, 2024. 4. 4.>

이 세칙은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4.4.4.>

별도 첨부파일 확인.